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이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과 그 통지를 받은 종업원 등이 해당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절차(안 제7조의3 제1항 신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 사실의 통지 기간 및 그 권리에 대한 양수 의사 통지 기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이 해당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진행 단계별로 권리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한으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함.
-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종업원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 기간을 권리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정함.

다.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취소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수반되는 업무 일부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의 기간에 포기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 등을 특허 여부의 결정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다만, 본문에 따른 날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19조의10제2항 중 “제40조의7제2항”을 “법 제40조의7제2항”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의 출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 영 시행 후에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u>		

말한다.

1.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
명에 대하여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
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특허등의 출
원을 한 경우: 「공업소유
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
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
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
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
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
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
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
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
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
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의 기간에 포기하
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를 특허 여부의 결정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다만, 본문에 따른 날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 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제7조의3 ~ 제7조의5 (생략)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신설>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조의4 ~ 제7조의6 (현행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와 같음)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40조의7제2항-----

----- 게시해야 -----.

제29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u><신 설></u>	<u>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에 관한</u> <u>업무</u> <u>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u> <u>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u> <u>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u> <u>고시해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154